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5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이정헌·황정아·노종면

박민규 • 최민희 • 김우영

정동영 · 한민수 · 조인철

김 현 • 이후기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제10조제10호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 ⑥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이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진흥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 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 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 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 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 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 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적으로 한다. 다.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임원) ①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 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명한다. 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 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신 설>

<u><신</u>설>

⑤ • ⑥ (생 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u><</u>신 설>

<신 설>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다만, 제 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 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⑤ • ⑥ (생략)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11. (생 략) <신 설>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 <u>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u> <u>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u>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